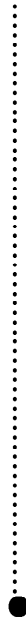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제306회 임시회(2019. 2. 11 ~ 2. 20)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해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복과 행운의 상징인 황금돼지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차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평창동계올림픽,
화해와 평화의 남북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태풍 콩레이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작년 7월 개원한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짧은 기간이
였지만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의를 반영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도정질문의 일문일답 도입, 국외연수 시스템의 전면개편, 4개 거점대학 자문체제 구축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고,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야·무소속 간 합리적 의견 조율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신뢰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열과 성을 다해 의회 발전의 탄탄한 초석을 다져 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올 한 해도 취업이 걱정 없고 아이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군을 직접 찾아가 지역의
현안과 고민을 들으며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하겠으며, 지방의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
으로 담아내도록 지방분권 TF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의
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영유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독도
현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타 시·도의회와 교류활성화 및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
으로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는데 협치와 소통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여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금년도 도정방향을 설계한 업무보고와 각종
안전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 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경 식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17
IV. 민원처리		18
V. 본회의 보고사항		20
VI. 5분 자유발언		23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23
□ 이철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6
□ 황병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9
□ 이수경 의원(농수산위원회)		32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35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38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41

부 록

□ 조 례 안(11건)	47
□ 결 의 안(1건)	103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11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월 20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11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6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2월 11일(월) 14시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수) 11시에 개의하여 네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세운 2019년도 새해 업무 보고가 있었다. 제대로 된 정책방향과 미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다진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07회 임시회로 2019년 3월 12일 오후 1시4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9년 2월 11일(월) 14: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9년 2월 11일 ~ 2월 20일(10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96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7	1	3	2	1	1	1	2	-	6
누 계	508	41	64	63	53	47	48	54	71	67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1(월)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박판수·이칠구·황병직 의원) □ 안전처리 ○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2. 20(수)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이수경·남영숙·박미경·박영환 의원)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2(화) 10:30 (제1차)	☐ 안전처리 ○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1(월) 10:00 (제1차)	☐ 안전처리 ○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2. 12(화) 11:00 (제2차)	☐ 안전처리 ○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미래전략 기획단, 투자유치실 소관) ○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2. 13(수) 11:00 (제3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 일자리경제산업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사전 보고의 건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동해안전전략산업국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2(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교육정책관,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13(수) 09:30 (제2차)	☐ 안건처리 ○ 2019년도 업무 보고(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2(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림자원국 외 관련 3개 사업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2(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를 건 ○ 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2(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건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2(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	
2. 19(화) 14:10 (제2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20(수) 10:00 (제4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20(수) 10:00 (제3차)	☐ 안전처리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20(수) 13:30 (제3차)	☐ 안전처리 ☐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20(수) 10:00 (제3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2(화) 10:00 (제3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	

〈인사검증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3(수) 11: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건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Ⅲ. 의안처리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06회) 의회 누계

구 분		접수 ㉠+㉡ +㉢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 결		부결				폐안
					위 안	수 정					
계		19 (168)	19 (168)	19 (168)	18 (152)	0 (15)	1 (1)	0 (0)	0 (0)		
조 례 안	소 계	11 (76)	11 (76)	11 (76)	11 (66)	0 (10)	0 (0)	0 (0)	0 (0)		
	의 회 안	4 (41)	4 (41)	4 (41)	4 (38)	(3)					
	도지사 제 출	3 (24)	3 (24)	3 (24)	3 (18)	(6)					
	교육감 제 출	4 (11)	4 (11)	4 (11)	4 (10)	(1)					
	규 칙 안	0 (1)	0 (1)	0 (1)	(1)						
예산·결산		0 (8)	0 (8)	0 (8)	(4)	(4)					
동의·승인		1 (24)	1 (24)	1 (24)	(22)	(1)	1 (1)				
건의안		0 (1)	0 (1)	0 (1)	(1)						
결 의 안		2 (19)	2 (19)	2 (19)	2 (19)						
기 타 안		5 (39)	5 (39)	5 (39)	5 (39)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4 (19)	2 (6)			1 (4)	(1)	(1)	(4)	(1)	1 (2)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1)						(1)			
행 정 보건복지	2 (4)	2 (4)								
문 화 환 경	(4)							(4)		
농수산	1 (5)	(2)							(1)	1 (2)
건 설 소 방	1 (4)				1 (4)					
교 육	(1)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3 (18)	3 (18)				1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행 정 보건복지	2 (4)	2 (4)				
문화환경	(4)	(4)				
농 수 산	(4)	(4)				1
건설소방	1 (4)	1 (4)				
교 육	(1)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19건(조례안 11, 결의안 2, 동의안 1, 기타안 5)

2. 처리 의안 : 19건

○ 가결 의안 : 18건(조례안 11, 결의안 2, 기타안 5)

○ 부결 의안 : 1건(동의안 1)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11건(원안가결 11)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9. 1. 31.	이칠구 의원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	"	조현일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3	"	"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19. 2. 12.	농수산위원장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19. 1. 30.	도지사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19. 1. 31.	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9	"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11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결 의 안 : 2건(원안가결 2)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9. 2. 11.	기획경제위원장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트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19. 2. 20.	의회운영위원장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 동 의 안 : 1건(부결 1)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9. 1. 31.	교육감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	부결

○ 기 타 안 : 5건(원안가결 5)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9. 2. 12.	의회운영위원장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2	"	도지사 교육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	"
3	"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	휴회의 건	"
5	'19. 2. 20.	인사검증위원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	"

4. 조례 공포 사항 : 11건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152호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019. 2. 28.	조례
2	제4153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
3	제4154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4	제4155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5	제4156호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6	제4157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7	제4158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 3. 11.	"
8	제4159호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9	제4160호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조례안	"	"
10	제4161호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1	제4162호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VI. 5분 자유발언

□ 2019년 2월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김천의료원 분만실 및 산후조리원 설치 촉구 관련 》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명운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정출산’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한때 미국 시민권 때문에 미국으로의 원정출산이 아니라, 우리 경북 산모들도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받아 줄 분만시설이 없어서입니다.

2019년 2월 현재 경북 도내에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영천과 상주 등 여덟 곳이며, 그마저도 없는 곳이 영양과 군위를 비롯하여 여섯 곳이나 됩니다. 광역도 중에 분만 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북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데 여기에 김천에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던 김천 제일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말 산후조리원을 폐원하였습니다. 분만실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15만 명의 도시에 신생아가 태어나도 받을 병원이 없게 생겼습니다. 분만병원 하나 없는 김천에서 산모들은 인근 구미·대구지역으로 원정출산을 떠나야 하고, 생사의 기로에 처한 긴박한 산모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의원이 2018년 12월 12일 제3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당시 이원경 국장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김천의료원에 분만실과 신생아실,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지난달 말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환경 조성이라는 급박함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실행계획 없이 의견만 협의한 상태입니다.

실제 경북도가 출자한 김천·포항·안동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이 모두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은 없으며, 분만전문의사도 없습니다. 공익성을 가진 공공의료원에서 적자를 이유로 분만실 운영을 꺼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 돈 되는 진료과목만 개선하고 의료인력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김천의료원의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김천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니만큼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도가 직접 나서서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매진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인력의 원활한 확보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천의료원은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뿐입니다.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려면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 도지사님께서 이 공약을 필두로 내세우셨습니다. 젊은 부부가 경북에서 아이 낳고 행복하고 싶은데 아이를 받아 줄 분만시설이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김천의료원의 분만실 운영과 공공산후조리원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발등에 불 떨어진 김천 지역의 출산 인프라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산모들의 건강권 보장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경북도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경북의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2월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철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완화 촉구 관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철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포항 흥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고, 포항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흥해읍 특별재생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포항 시민들에게 지역의 재건과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흥해읍의 특별재생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재생사업 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읍에는 유형문화재 제451호인 포항 홍해향교 대성전과 기념물 제21호인 이팝나무 군락, 그리고 문화재자료 제250호인 제남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200m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건물 신축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면 문화재의 반경 200m 내 문화재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16m를 초과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향교와 영일민속박물관 등 3개의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진 주택과 상가도 매매 없이 썩썩 묶여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및 범위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업무 협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미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홍해 특별재생 주민협의체, 홍해 특별재생 도시재생대학 동창회, 홍해 이장협의회 등 4만 홍해읍 주민들은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1월 4,685명의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홍해 재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대규모 피해를 입은 홍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개발이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포항은 단순한 지진피해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포항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이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해읍 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특별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포항이 새롭게 재건
되고 포항 시민의 가슴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2월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황병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2021년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유치지원 촉구 관련 》

영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과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철우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님들에게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2021 영주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주시 풍기읍은 역사적으로 고려인삼 종주지로서의 상징성과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인삼시장의 놀라운 성장과, 국내에서도 금산을 비롯해 타 지역 인삼시장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충남 금산에서는 세계인삼엑스포를 이미 세 차례나 개최한바 있고, 2017년에 개최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284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5,202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6,230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거두는 등 인삼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에 명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삼특화도시이자 주산지로서 영주의 위상을 되찾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영주 풍기에서 세계인삼엑스포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영주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에 완료하였고, 올해 3월에 중앙에 투자심사 의뢰를 준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용역 결과, 풍기세계인삼엑스포로 인한 파급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 2,47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5억 원, 취업 유발효과 2,798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재정 부담이 큰 만큼 경북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유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성장축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 수요 및 맞춤형 공모사업을 올 3월에 공모하여 8월에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고, 도의 자율균특사업과 병행하여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주시에서는 사업 추진단계에 맞추어 예산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전향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비로 균특회계 국비 50억 원과 도비 34억, 시비 13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4월에 2020년도 균특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지원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지사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불철주야 뛰어온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전향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야말로 세계로 열릴 문화관광 경북의 촉매제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부합되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적시에 제대로 지원되어 경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9년 2월 20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수경 의원(농수산위원회) ◎

《 남부내륙철도 경북역사 건립 관련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부내륙철도 경북 역사와 관련하여 경북지역
내 역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과 성주·고령, 경남 합천·진주 등 아홉 개
시·군을 통과하는 연장 172km, 총사업비 4조 7,000억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에 발표된 KDI의 기초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남부
내륙철도의 역사는 모두 여섯 곳으로 경북지역에는 기점인 김천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경남지역에 5개의 역사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서부 경남지역은 이 사업으로 인해 서울과 2시간여 만에 왕래가
가능해져 교통 물류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열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역 간 거리를 살펴보면 김천~합천 구간은 65km로 고성~통영 14.8km, 통영~거제 12.8km 구간보다 2배 이상 길지만 경북에는 역사건립 계획 없이 단선 구간, 정거장 사이에서의 열차 교행을 위한 신호장만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경북 내 신설 역사 단 한 곳도 없이 경남 지역에만 편중된 사업계획들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바로 '경북 패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부 경북은 안중에도 없고 서부 경남만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홍물처럼 철길만 남기고 지나간다면 경북도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주군은 포항~새만금을 연결하는 동서 7축 고속도로 구간 중 경상도와 전라도, 신라와 백제를 잇는 성주~무주 간 즉, 나제통문 구간만 빠져있어 이번 예타 면제구역 지정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또한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서 전국의 반대 투쟁으로 지역민심은 두 동강 났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주군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 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정부의 지원조차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남부내륙철도마저 상처만 남기고 그냥 지나친다면 성주군민과 도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주·고령지역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경북에서 제일 오지가 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가야문화권과 국립공원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교통 인프라만 구축되면 경북의 관광 중심지로 급부상할 수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낙후된 경북 서부권 개발 촉진의 초석이 될 남부내륙철도, 경북 서부권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경북 역사 건립을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관련 연구용역을 빨리 진행하여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경북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또다시 경북 패싱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울러 남부내륙철도 경북 역사 건립에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2월 20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

《 도비 보조금 관련 》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30여 년 동안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으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어 자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매칭펀드 형태로 시행되는 국가위임사무와 도비보조사업이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산 과다편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꼭 필요한 민생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복지 부분을 비롯한 도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농업부분의 예를 들면 시·군마다 추진해야 할 도비 보조금 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시·군과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41개 보조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체 보조사업 중 도비가 16%, 시·군비가 43%, 자부담이 41%로 도비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과수생력화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5%인 경우도 있었으며 도비 부담률이 10 내지 15%인 사업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시·도와 시·군·구 부담비율을 통상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기준 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의 기준 부담률 보조금 조례에서 최소 30%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하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기준 부담률을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 없이 결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군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평균 2.5배나 높기도 합니다.

또한 자체사업 도비 보조금 규정을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조차 도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하며 자체사업 도비 보조금 비율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농기계와 농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농업인들까지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23개 시·군 및 주민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서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총액을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비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세부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을 투명성 있게 제고해야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해묵은 과제로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 지원, 기준 부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 보조사업의 조정, 기준 보조율 준수, 보조율의 불균등 해소 등 도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경상북도가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2월 20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반려동물 학대에방 및 보호 관련》

바른미래당 소속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인력 지원, 동물 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실시, 적정 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에 달하는 약 593만 가구 즉, 네 가구당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매년 20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어난 지 3개월 된 반려견이 대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집어던져져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70마리를 굶겨 죽인 애견 판매업자, 길고양이 600마리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사건 등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물 학대로 인해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닌 가족구성원 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인생 목표까지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 도내에는 3만 7,742두가 등록되어 전국 등록률의 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을 사용해서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등록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등록 시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예방교육이나 처벌규정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비해 보호센터의 수용 능력과 관리 인력은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경북 도내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26개소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시설 기준에 맞게 개체 수가 정해져 있지만 유기동물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예산으로 오히려 2차적인 동물 학대로 이어질까 매우 두렵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고유번호 미등록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또한 고의로 유기했을 때의 책임 등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들의 학대 예방과 유기에 따른 치료와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인력 지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야간이나 연휴에 응급진료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도입도 적극 촉구합니다.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외에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접수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 휴게음식점, 학원, 숙박업소 등 요금표 게시 등 다양한 공시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비 사전 안내 및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제도가 없어서 진료비 편차가 두 배에서 여섯 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 불신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진료비 사전 고지와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적정 진료비 고시제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려 및 유기동물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는 반려동물들의 증가에 비해 책임 의식이 뒤따르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동물권 보호와 복지에 대한 보다 나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반려동물 확대와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과 인력 지원,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적정 진료비 고시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2월 20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대형 국책사업 관련》

사랑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지역·계층·세대·이념·성별을 비롯한 각종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인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의치며 출범한 민선 7기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취업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140만 2,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7,000명이나 감소하였으며, 고용률도 60.5%로 2017년 60.8%에 비해 0.3% 포인트 감소하는 등 경북도의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의 삶이 팍팍한데 여기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경북 소외론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정부기관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도지사와 경북도의 유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북 패싱 움직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도민들의 우려와 박탈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편성된 2019년도 정부 예산은 슈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국비사업은 예산 홀대로 TK 패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우리 경북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당초 제안은 7조 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 사업과 4조 원 규모의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제외되고 당초 신청 금액의 10%만 반영된 4,000억 원 수준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만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7년간 공들인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도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14조 규모로 추정되는 원전 해체사업을 이끄는 중심 기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등의 원자력 핵심 유관기관이 있고,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50%인 12기가 몰려있는 경북으로 오는 것이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의 3월 최종 입지결정을 앞두고 도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통합신공항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미 지난 정부 시절 5개 시·도가 수용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부산시장의 정부

결정 거부 선언과 재검토를 시사하는 대통령의 부산 발언으로 여러 예측이 난무하고 지역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미 수도권으로 기울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경북이 또 다시 물을 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의 대형 국책사업이 좌초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해년 세해를 맞이하면서 도지사께서는 ‘환골탈태’를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경북 발전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있습니다. 도지사님의 고민도 적지 않겠으나 도정을 믿고 바라보는 도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유치,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구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할 만큼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자조 섞인 대응보다는 3백만 도민이 지사님을 응원하고 있는 자긍심으로 도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11건)	47
□ 결 의 안(1건)	103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철구 의원('19. 1. 31)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조현일 의원('19. 1. 31)
-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현일 의원('19. 1. 31)
-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장('19. 2. 12)
-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1. 30)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1. 30)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1. 30)
-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19. 1. 31)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9. 1. 31)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19. 1. 31)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9. 1. 31)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기업활동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피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에 따라 관내 초·중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소속 교직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지원
4.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5.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폭력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 사례 발굴·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학생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생활습관 형성
 2. 건전한 가치관 형성
 3.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교육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학교장이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생 교육을 학급별로 정규 수업시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직원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문화 이해
2. 학교급별 맞춤형 지도
3. 소속 교직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지도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장이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직원 교육을 학기 초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부모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정의 학교폭력예방 기능 강화
2. 청소년의 발달단계 이해
3. 자녀와의 소통 방법
4. 학교폭력예방 활동 공유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비폭력 문화 정착
2. 학생 토론 문화 정착
3. 동아리 활성화
4. 등교 전·후 및 휴일을 이용한 체육 활성화
5. 바른 언어 사용 문화 정착

6. 그 밖에 학생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업무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부과 금지) 교육감은 교직원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거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4.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확대 운영
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사후조치)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교육적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학교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 교육·인권·청소년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미래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으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비전 및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 정책 추진 상황 및 현안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4. 기타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사회 인사
4. 학식과 덕망이 높고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모니터단의 운영) 교육정책의 추진상황의 파악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교육
지원청별로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농식품 유통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6차산업을 통한 농식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식품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건전한 식문화 확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농업분야 대응에
관한 사항
 13.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14. 농업 전문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15.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업인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업·농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농축산분야 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도지사가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② 위촉직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도지사가 별도의 기간을 정할 시 그 기간을 따른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상임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제10조(정책연구 T/F팀)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 T/F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연구 T/F팀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및 활동계획 제출) ① 위원회는 해당연도 9월까지 다음연도 위원회 운영 및 활동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상임위원회·위원회 소속직원 및 기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반규정 등에

따라 보수·수당·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상임 위원회, 정책연구 T/F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소속 인력 및 그 밖의 저작물 등 유·무형의 경상북도 농어업자유 무역협정대책 특별위원회 명의를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명의로 본다.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도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증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법령·자치법규 등에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도 단위의 각종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위원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 실·국·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본부·원장과 정책기획관,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개최일시 및 의안 내용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제14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5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및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에너지관련 교육·홍보·행사 등 시책 사업
- 14.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 17. 에너지 융복합 구축 사업
- 25. 청년 정착 에너지 지원 사업
- 26.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며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 ⑥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부지사-----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세계·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 시책과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전국 대학(원)생 에너지 대회 5. ~ 11. (생 략) 12. 에너지절약학교(SCHOOL) 운영 사업 13. (생 략) 14. 노약자이용 취약시설 전기안전 점검 사업 15. ~ 16. (생 략) 17. 지능형 융복합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사업 18. ~ 24. (생 략) 〈신 설〉 〈신 설〉 25. (생 략) ③ (생 략)	제17조(세계·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식 제〉 5. ~ 11. (현행과 같음) 12.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행사 등 시책사업 13. (현행과 같음) 14.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15. ~ 16. (현행과 같음) 17. 에너지 융복합 구축 사업 18. ~ 24. (현행과 같음) 25. 청년 정착 에너지 지원 사업 26.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사업 27. (현행 제2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담당 실· 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부지사—————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 ————— ———.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 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 위임기관이 승인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경상북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경상북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6.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8. 계약의 해지
9.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4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제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제14조(종합성과평가) 교육감은 위탁기관의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 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효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두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두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창흥로36번길 23

“포항양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양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양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천마로89번길 18-10

“구미인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인동30길 53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유치원		【별표 1】유치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신	설〉	두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창흥로36번길 23
〈신	설〉	양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천마로89번길 18-10
〈신	설〉	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미시 인동30길 5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의 대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 분장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장 본청

제6조(국의 설치)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제7조(설치) ① 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현장연구지도,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정보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에 둔다.

제8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제9조(설치) ① 교육공무원·일반직 공무원 및 교육실무직원의 연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14에 둔다.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절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제11조(설치) ①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교직원 및 경상북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 제공 및 이용·정보화교육·문화활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함양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0에 둔다.

제12조(관장) 정보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절 화랑교육원

제13조(설치) ①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난 얼을 체득시켜 주체성이 강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새남산길 62에 둔다.

제14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절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제15조(설치) ①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과학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미길 93에 둔다.

제16조(원장) 과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절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

제17조(설치) ① 경상북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이하 “교육청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청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관장) 교육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절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제19조(설치) ①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화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에 둔다.

제20조(원장) 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절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제21조(설치) ①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201에 둔다.

제22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절 교육지원청도서관

제23조(설치) 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도서관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관장) 교육지원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

제25조(설치) ①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협동심, 인내력, 지도력 등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의 명칭·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6조(관리소장)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에 관리소장을 두고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사무 분장

제27조(사무 분장) 본청 국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장의 사무 분장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기획조정관과 교육정책국”을 “정책기획관과 교육국”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책과장, 초등과장, 중등과장, 과학직업과장”을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복지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9조부터 제33조”를 “제7조부터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4조부터 제36조”를 “제23조부터 제26조”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5조 및 35조”를 “제17조 및 제23조”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9조부터 제33조”를 “제7조부터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4조부터 제36조”를 “제23조부터 제26조”로 한다.

⑬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별표 1]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17조제2항 관련)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산책길 41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안기천로 48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용상분관	경북 안동시 경동로 884-8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들길 22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상서문1길 127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화령분관	경북 상주시 화서면 중화로 2193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	경북 영주시 영주로60번길 38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풍기분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152-12

[별표 2]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2항 관련)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02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천로 15-11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	경북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 538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경북 의성군 의성읍 증리길 44
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7길 17
경상북도교육청 울릉도서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 128-10
경상북도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75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4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3길 13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98
경상북도교육청 청송도서관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경상북도교육청 고령도서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1길 10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	경북 문경시 호서로 133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가은분관	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2508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1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3길 6
경상북도교육청 금호도서관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73

[별표 3]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제25조제2항 관련)

수련원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교육청 안동학생수련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교육청 상주학생수련원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별표 4]

사무분장(제27조 관련)

1. 본 청

구 분	사무분장
교육국장	1. 교육복지 및 국제·문화교육 업무 2. 특수교육 업무 3.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4.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유아교육비 지원 5. 교원 및 전문직 임용·인사 및 정·현원 관리 6. 창의융합교육 및 영재교육 업무 7. 직업교육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8.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관리 9. 체육교육 및 학교 보건·급식 업무 10.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11. 대안학교 총괄 및 학업중단·학교 밖 학생 관리 12.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인권 업무 13.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행정국장	1. 각종 회의·행사·보안·당직·공문서·공인·차량·청사 관리 업무 2. 지방공무원 임용·인사·교육훈련 및 복무 관리 3. 민원·정보공개 처리 및 기록물 관리 4. 각급 학교·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및 폐지 6. 교육안전 기획 및 새해·새난 안전 관리 7.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운영 8.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

구 분	사무분장
행정국장	9. 교육실무지원 인사·노무 및 정·현원 관리 10. 학교 법인 설립 및 폐지 11. 사립 초·중·고등학교 운영 지도 12.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3.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14. 교육정보화 추진 및 정보보호 업무 15. 교육시설 및 학교 공간·환경 기획 관리 16. 학교 시설관리 전반 17. 그 밖에 교육행정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2.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사무분장
1. 교육정책 연구·개발 2. 교육과정 연구 3. 학력평가 및 학교평가 4. 연구학교 관리 및 현장교육 연구 지원 5. 인성·인문학 교육 및 진로교육 연구 지원 6. 국제교육과정 연구 및 국제교류활동 지원 7. 교육용 자료 개발·관리 8. 사이버 학습 운영·지원 9. 경북교육포털시스템 관리 10. 학교홈페이지 구축·관리 11. 그 밖에 제7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3.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사무분장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과정 운영 3. 연수 평가 및 결과 심사 분석 4. 원격연수 운영 관리 5. 각종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 6. 그 밖에 제9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4.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사무분장
1.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 2.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3. 정보화 교육 실시 4. 평생교육실시 기획 및 운영 5. 교육행정업무 전산·정보화 6.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 사무분장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7. 그 밖에 제11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5. 화랑교육원

사무분장
1. 학생수련 과정 운영 2. 교직원 연수 과정 운영 3. 외부 단체 및 기관의 위탁수련 및 연수 4. 그 밖에 제13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6.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사무분장
1. 과학교육 장학 및 연구학교 관리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개발 및 보급 3. 교원연수 및 학생실험실습 지도 4. 과학관련 대회 및 행사 5.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6. 과학관련 전시 및 전시실 운영 7. 메이커교육 및 발명교육 업무 8. 수학문화관 운영 9. 그 밖에 제15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7.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

사무분장
1.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존 2. 공중과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제17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8.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사무분장
1. 예·체능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2. 체험학습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3. 학생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문화·평생교육 활동 지원 5. 그 밖에 제19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9.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사무분장
1. 해양수련 및 심신수련 활동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휴식 공간 제공 3. 그 밖에 제21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10.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구 분	사무분장
교육지원청 도서관장	1.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존 2. 공중과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제23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구 분	사무분장
교육지원청 학생수련원 관리소장	1. 학생수련원 시설·설비와 장비 유지관리 2. 학생수련원 사용허가 및 장비 대여 3. 학생수련원 사용자의 수련 및 교육 운영 4. 학생수련원 사용자의 안전 및 급식·보건 5. 그 밖에 제25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합계란의
“48”을 “49”로 하고,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본청(직속기관)란의 “24”를 “25”로 하며,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합계란의 “345”를
“34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기관별 직급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단위 기관별 직급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9	-	25	-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45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44	-			

㉔ 결 의 안 ㉔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장('19. 2. 20)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2월 20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 제안이유

-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9. 3. 12(화) 13:40(제1차 본회의)
 - 2019. 3. 13(수) 14:00(제2차 본회의)
 - 2019. 3. 25(월) 11:00(제3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06회 임시회)



2019. 3. 인쇄 / 2019. 3.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